

KERI Brief

한계기업 현황과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
(yunkim@inu.ac.kr)

미 국 Fed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인상기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업의 금융부담이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업부채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통해 지연된 일부 기업의 부실 역시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한계기업 현황을 통해 국내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015-2021년 생존한 비금융 외감기업을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실의 만연화가 우려된다. 특히 중견 또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 및 속도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산업으로는 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높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내 한계기업의 수가 많다. 국제비교를 위해 세계 주요 거래소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나스닥(NASDAQ),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TSE), 홍콩증권거래소(HKSE), 중국의 상하이증권거래소(SHSE) 및 선전증권거래소(SZSE), 한국의 유가증권 상장사(KOSE) 및 코스닥

(KOSDAQ)에서 거래되는 기업을 분석하였다. 2021년 한계기업의 비중을 검토한 결과, 한국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은 홍콩증권거래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2017년 대비 2021년의 증가폭 역시 홍콩증권거래소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국내 기업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의 설계를 목표하는 동시에 기존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즉,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일몰 이전에 시작해야 한다. 2001년 도입 이래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시화하고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상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역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사전적 구조조정으로서 의의가 존재하므로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에 앞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 문제 제기

- 정부는 2022년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당면 현안대응의 리스크 관리 내 시장 원리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발표(대한민국 정부, 2022)
- “거시경제 및 가계·기업 등 부문별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①정책공조 기반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마련, ②거시경제 여건·취약계층 피해 등 종합 고려한 정책조합 추진, ③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재기 지원, ④시장 원리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포함
- 한계기업 구조조정 촉진에는 신용위험평가 운용 내 실화를 통해 시장의 기업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원활화와 기업구조 혁신펀드 신규 조성 추진
 - 코로나 이전과 같이 기업위험평가에 일시적 영향을 배제없이 평가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기업구조조정 혁신펀드는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민간자금 매칭을 기초로 필요시 재정투입을 검토

□ 2021년 정기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이 감소한 데는 유동성지원 조치의 영향이 있으며 최근 신용위험평가 기준이 강화되어 부실징후기업이 증가할 가능성

- 2021년 정기 신용위험 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전년대비 3개 증가한 160개가 선정되었으며 C등급은 79개, D등급은 81개로 각각 전년대비 13개 증가, 10개 감소함(금감원, 2021)
 - 부실징후기업 수의 감소는 유동성 지원 조치(만기연장, 상환유예 등)로 인한 자금사정 개선, 2020년 하반기 이후 수출 증가 등의 실적개선에 기인
 - 코로나기간인 2020-2021년 동안 기업신용위험평가의 시점을 조정하거나 부실징후기업 선정에서 예외를 인정(내일신문, 2022)¹⁾
- 2022년 2월 금감원 업무계획에서 구조적 부실기업 선별과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기능을 제고하기로 하였고, 2022년 5월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개정 발표

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4179

〈표 1〉 부실징후기업 추이(2017-2021)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증 감
세부평가대상	합 계	2,906	2,952	3,307	3,508	3,373	△135
	대 기 업	631	631	599	659	639	△20
	중소기업	2,275	2,321	2,708	2,849	2,734	△115
부실 징후기업	합 계	199	190	210	157	160	+3
	C등급	74	53	59	66	79	+13
	D등급	125	137	151	91	81	△10
	대 기 업	25	10	9	4	3	△1
	C등급	13	5	3	2	3	+1
	D등급	12	5	6	2	-	△2
	중소기업	174	180	201	153	157	+4
	C등급	61	48	56	64	76	+12
	D등급	113	132	145	89	81	△8

출처: 금감원 보도자료 (2021.12.17.) 인용

주: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 개정 상시평가운영협약에서는 기업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은행의 재량적 평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성평가 기준을 줄이고 정량화했으며, 수시평가 기준을 강화(구정환, 2022)²⁾

□ 미국 Fed의 금리인상과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미국 Fed는 2022년 3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여 연 0.25~0.5%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제로(0) 금리' 역시 종식
- 기준금리는 6월과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 2.25~2.5%이나 제롬 파월 Fed 의장이 8월 26일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쉬어갈 때가 아니다"라고 천명하여 지속 상승 전망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18년 11월부터 2020년 5월 까지 네 차례 인하하다 2021년 8월 인상을 포함해 2022년 8월까지 7차례 인상하여 2.50%를 기록(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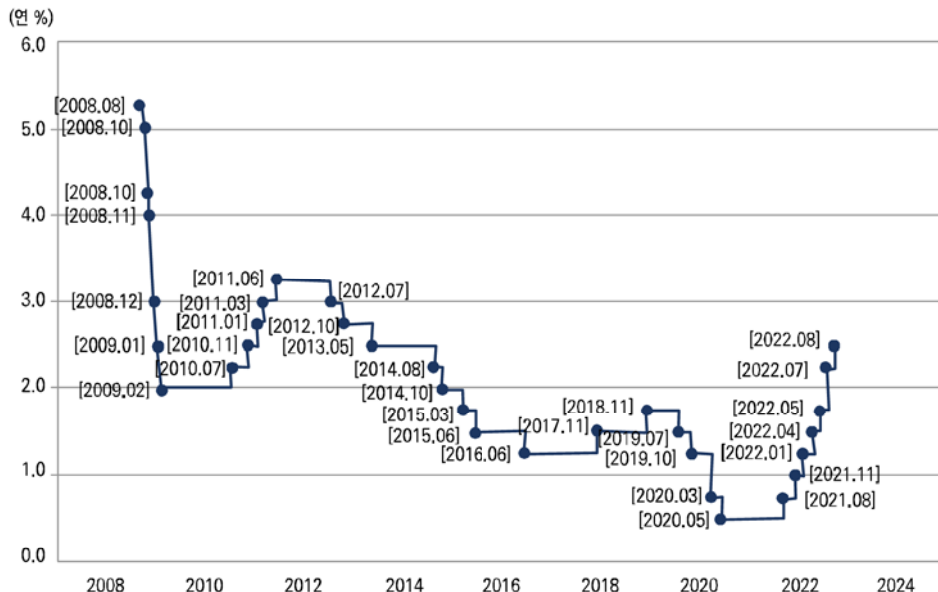
- 8월 25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올해 10, 11월 금통위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연말 3.0% 전망

□ 본 보고서는 한계기업 현황을 검토하고 사전적 및 사후적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개선을 제시

- 한계기업 현황을 통해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살펴보고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둔화 가능성이 증가함에 대응해 구조조정 제도개선을 제언

2) 구정환(2022), 기업신용위험 평가지표 개선과 향후과제, 금융브리프 제31권 11호, 금융연구원

〈그림 1〉 한국 기준금리 추이



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 인용

II. 한계기업의 추이

□ 한계기업은 영업활동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기업으로 자체 능력으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며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약화

○ 한국은행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중소기업(Caballero et al. 2008)으로도 표현됨

- 경기순환형 산업은 하강(상승)국면에서 기업의 역량과 관계없이 이자보상배율이 감소(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자보상배율은 기업 한계상황을 유용하게 전달하는 정보(구정한·이규복, 2021; 이상호, 2021³⁾)

- 최근 연구에서는 신생기업을 배제하기 위해 이자보상배율에 기업 업력(업력 10년 이상, 5년 이상)을 추가 (Banerjee and Hofmann, 2020; 송단비·조재한·김한현·김인철, 2021)

○ 한계기업은 해당기업의 재무적 곤경 외에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Caballero et al.(2008)은 일본의 1990년대 부실기업의 지원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해당 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이며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금융지원으로 인한 직접비용을 초월한다고 분석

- 최현경 외(2017)은 한계기업 지원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내 정상 기업의 고용과 생산성에도 부의 영향, 재정지원 금액보다 더 큰 부정적 영향

- 송상윤(2020)⁴⁾은 국내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절반 이하에 불과하고 한계기업이 경제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 한계기업의 비중 증가는 국내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증가

- 세계 79개국 한계기업 비중이 2005년 평균 4.6%에서 2016년 8.6%로 크게 증가하고 개도국에 비해 선진국에서 더 빠르게 증가(EI Ghoul et al. 2020)

- OECD 14개 회원국의 한계기업 비중이 1980년대 중반 4%에서 2017년 15%로 증가(Banerjee and Hofmann, 2020)

- 박창균·정화영(2020)에 따르면 국내 한계기업이 차년도에 한계기업으로 지속될 확률이 2002년 68%에서 2017년 75%로 증가하며 이는 기업 부실화를 나타냄

□ 국내 외감기업 내 한계기업이 2018년 이후 증가한 이후 코로나기간인 2020-2021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외감법)의 대상 기업으로 KIS-Value⁵⁾내 재무정보가 2015-2021년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 생존편의가 존재하나 선행연구를 따라 분석기간 전체 생존기업을 이용하였으며, 금융산업(KSIC분류 K) 영위기업을 제외한 22,388개를 대상

○ <표 1>에서 한계기업의 수가 2019년 2,283개였으나 코로나 기간 역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2,823개 기업에 이름

- 분석기간 내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부터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3) 구정한 이규복(2021),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추진 방식 점검, 한국금융연구원, 이상호(2021), 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한계기업 구조개혁 필요성, 자본시장 Focus 2021-3, 자본시장연구원

4) 송상윤(2020),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BOK 이슈노트, 2020-7, 한국은행

5) KIS-VALUE내 기업의 수는 추출시점에 따라 상이함(최현경·안지연, 한계기업 결정요인 분석과 코로나19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 - 제조업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20)

- 저금리기조의 낮은 이자비용, 코로나 기간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의 효과로 인해 과소계상되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움
-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이, 상장기업 보다는 비상장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뚜렷함
 - 기업규모 비교에서는 중소기업 내 한계기업의 증가세가 뚜렷하며 2019년 대비 25.44% 증가하여 2,130개에 이르며 중소기업 내 비중은 13.19%에 이릅니다
 - 상장여부로 비교했을 때에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율은 비상장기업이 24.66%로 상장기업의 17.21%에 비해 크게 높으나, 비중으로 볼 때에는 분석기간 내내 상장기업이 더 크게 나타남

- 제조업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적 부실에 대한 우려
 - 제조업의 경우,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내 한계기업의 수가 많음
 -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율은 항공운송업(H51, 30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B07, 300%), 음식점 및 주점업(I56, 200%), 음료 제조업(C11, 200%), 가구 제조업(C32, 100%),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E38, 100%) 순으로 나타남

〈표 1〉 한계기업 추이

기업수,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19-21증가율
전체(N=22388)	1,853	1,991	2,283	2,617	2,823	23.65%
	8.28%	8.89%	10.20%	11.69%	12.61%	
종업원수	209,043	200,484	247,710	310,970	313,745	26.66%

기업수,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19-21증가율
중소(N=17979)	1,517	1,648	1,891	2,200	2,372	25.44%
	8.44%	9.17%	10.52%	12.24%	13.19%	
중견기업, 대기업(N=4390)	334	341	389	413	449	15.42%
	7.61%	7.77%	8.86%	9.41%	10.23%	
기타(공기업 등)(N=19)	2	2	3	4	2	-33.33%
	10.53%	10.53%	15.79%	21.05%	10.53%	

기업수(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19-21증가율
상장(N=2,150)	244	267	308	344	361	17.21%
	11.35%	12.42%	14.33%	16.00%	16.79%	
비상장(N=20,238)	1,609	1,724	1,975	2,273	2,462	24.66%
	7.95%	8.52%	9.76%	11.23%	12.17%	

주: 상장은 유가증권, KOSDAQ, KONEX를 모두 포함

자료: KIS-Value 2015~2021년 재무자료 존재기업 이용하여 계산

〈표 2〉 한계기업 추이의 산업별 비교(대분류)

대분류	기업수	2017	2018	2019	2020	2021	21 비중
A/농업, 임업 및 어업	95	7	13	17	23	17	17.89%
B/광업	57	1	2	3	5	9	15.79%
C/제조업	10,939	658	773	922	1,064	1,141	10.43%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4	23	24	21	18	14	9.72%
E/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61	33	36	36	42	49	18.77%
F/건설업	1,522	43	49	67	84	100	6.57%
G/도매 및 소매업	3,250	165	154	197	227	278	8.55%
H/운수업	881	120	125	134	155	153	17.37%
I/숙박 및 음식점업	314	90	88	102	121	131	41.72%
J/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29	76	85	93	117	124	10.98%
L/부동산업 및 임대업	1,706	275	287	332	399	439	25.73%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68	51	61	71	80	84	10.94%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32	170	160	166	179	190	25.96%
P/교육 서비스업	68	5	6	8	9	11	16.18%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	2	2	4	3	3	37.5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66	109	105	89	67	56	15.30%
S/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8	25	21	21	24	24	16.22%
총합계	22,388	1,853	1,991	2,283	2,617	2,823	

〈표 3〉 한계기업 추이의 산업별 비교(중분류, 상위 20개)

중분류	기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1 비중
L68/ 부동산업	1,649	266	278	322	388	426	25.83%
G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2,776	117	109	140	170	209	7.53%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17	95	118	144	192	201	16.52%
N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418	157	147	149	157	160	38.28%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26	84	94	103	116	146	8.98%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10	88	96	104	133	135	13.37%
I55/숙박업	213	79	80	94	106	107	50.23%
F41/종합 건설업	869	35	36	55	68	83	9.55%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885	46	58	71	76	82	9.27%
H49/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86	41	48	54	73	73	25.52%
J58/출판업	670	43	50	51	68	70	10.45%
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440	58	61	62	63	63	14.32%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96	47	45	46	47	57	19.26%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38	35	43	62	62	55	7.45%
C28/전기장비 제조업	606	24	32	32	44	54	8.91%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44	34	37	48	44	54	22.13%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77	22	34	47	51	52	7.68%
C10/식품 제조업	730	35	40	48	48	50	6.85%
C24/1차 금속 제조업	737	42	50	63	75	49	6.65%
G47/소매업; 자동차 제외	316	35	32	40	39	48	15.19%

□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의 한계기업을 검토한 결과
(〈표 4〉) 한국 상장기업의 2019-2021년 증가율은
낮으나 비중 및 2017년 대비 비중 증가세가 높음

○ S&P Capital IQ 데이터베이스 내 2015-2021 재무
자료가 존재하는 비금융기업 대상으로 미국의
NYSE와 Nasdaq,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 홍콩
증권거래소(HKSE), 중국의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
전증권거래소, 한국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의 5개
국가 증권거래소 기업비교

○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율은 TSE, SHSE·SZSE,
HKSE, NYSE·NASDAQ, KOSE·KOSDAQ순 으로 나
타났으나 규모 및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
2017-2021비중 증가폭은 KOSE·KOSDAQ이
6.20%p로 12.67%p를 보인 HKSE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남

- 2021년 한계기업 비중은 HKSE 28.85%,
KOSE·KOSDAQ 17.11%, NYSE·NASDAQ 14.62%,
SHSE·SZSE 8.28%, TSE 3.60% 순

〈표 4〉 주요거래소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의 국가별 추이

거래소명	기업수	2017	2018	2019	2020	2021	2021 비중(%)	19-21 증가율(%)	17-21 비중변화(%p)
NYSE, NASDAQ	2,285	293	279	301	321	334	14.62	10.96	1.79
TSE	2,392	32	47	49	61	86	3.60	75.51	2.26
HKSE	1,799	291	314	350	425	519	28.85	48.29	12.67
SHSE, SZSE	3,671	219	198	203	240	304	8.28	49.75	2.32
KOSE, KOSDAQ	1,934	211	249	299	315	331	17.11	10.70	6.20

주: Nasdaq은 Nasdaq Global Select와 Nasdaq Global Market을 의미

자료: S&P Capital IQ 이용하여 계산

Ⅲ. 현행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

- 기업부실 발생 여부에 따라 사전적,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구분되며 제도적으로 사전적 구조조정 방안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과 사후적 구조조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및 통합도산법으로 역할과 제도가 구분됨(표 5)
- 국내 기업구조조정 방안은 기업부실 발생 여부에 따른 시점에 따라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으로 나누어지며 구조조정은 법원 내외의 구조조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관련 법률로는 사전적 구조조정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사후적이며 법원의 개입이 없는 워크아웃을 주관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법원주도의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칭 통합도산법)이 존재
-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채권단은 기업을 A, B, C, D의 네 등급으로 구분하며 A, B등급은 구조조정을 사전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부실징후기업 C등급과 D등급은 각각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함

〈표 5〉 국내 구조조정 관련 법률 비교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통칭 통합도산법)
최초도입	2016년	2001년	2006년
상시법 여부	한시법 (2024년 일몰예정)	한시법 (2023년 일몰예정)	상시법
활용대상	①공급과잉분야 기업 기촉법·통합도산법 대상 기업 제외 ②신산업진출기업 ③산업위기지역 추진 산업기업	부실징후기업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시점 (신용위험평가등급)	사전 (A, B)	사후 (C)	사후 (D)
벤치마크	일본 산활법, 산업경쟁력강화법	영국 런던방식	
특징	제도특례, 세제지원	워크아웃	법정관리

□ 2006년부터 시행 중인 통합도산법과 달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어 제도적 불확실성이 크고 안정적이지 못함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도입되었으며 세 차례 실효 및 재도입 또는 기간연장을 거쳐 2018년 10월 다시 입법되어 제6차 기촉법이 2023년까지 5년 한시법으로 시행 중

- 제1차(2001~2005년), 제2차(2007~2010년), 제3차(2011~2013년), 제4차(2013~2015년), 제5차(2015~2018년), 제6차(2018~2023년)이 진행되며 각 차수 사이에 제도적 공백, 기업 혼란 등 피해 반복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2016년 8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었다가 2019년 8월 개정과 함께 5년 연장되어 2024년 8월에 일몰 예정

□ 기업의 실제적 수요가 존재하므로 기촉법을 제도적으로 상시화하여 부실징후기업 대상 구조조정제도의 안정성을 확보

○ 제도의 위헌성 논란과 함께 관치금융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으로 인해 기촉법을 폐지하고 통합도산법으로 포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상시화되지 못함

- 금융위원회는 관치금융수단이 아니라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함(연합인포맥스, 2014)⁶⁾

○ 절차의 편의성과 기업의 부실극복 가능성이 큰 장점이 타 제도로 대체되기 어려운데다 일몰 시점에 재논의가 반복되는 제도적 불안정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이 왜곡될 우려

- 금융채권자로 의결대상을 제한하고 총신용공여액의 75% 이상 동의로 의결되며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회생가능성 신호효과가 존재

○ 2023년 일몰 이전에 상시화와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관련해 논의를 답습하기보다는 신속히 제도화하여야 함

□ 기활법 대상을 확대하여 사전적 사업재편을 활성화하여 산업 및 국가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기활법은 2016년 도입 이후 첫 해 승인기업 수가 15개에 불과하였으나 누적 활용기업이 2018년 100개, 2021년 200개, 2022년까지 300개 이상으로 증가

- 산업통상자원부(2022)는 향후 5년간 업종별 핵심기업 사업재편을 500개까지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기활법의 상시화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포함됨

○ 제도특례 및 세제지원 등이 제공되므로 기활법 활용요건은 과잉공급 업종,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어 대상 기업이 제한적임(표 6))

- 과잉공급업종의 성립요건이 엄격하며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병행) 수처로 제시된 요건들 역시 과도하다는 평가

- 확대된 신산업진출 요건 역시 사업재편의 의미를 협소하게 정의한 것이며, 신사업여부 역시 현 조세특례법 상 신기술분야를 기준

6)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239>

○ 선제적 사업재편이라는 입법목적에 따라 기업의 사업재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법률로 제한하기 보다는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의 완결성과 승인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자율성을 확대하고 법률의 연장보다는 상시화를 검토하여야 할 것

- <표 7>처럼 제20대 국회에 기활법 연장, 상시화, 대상 확대에 대한 발의안이 존재하며 법률의 효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법률의 방향을 결정할 필요

- 최근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관련 승인기업이 증가하듯 법에 활용대상과 기술을 명시하고 새로운 기술 및 기업환경 반영을 반복한다면 사업재편 지원의 신속성을 달성하기 어려움

- 벤치마크 대상인 일본의 산활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대상을 명시하지 않음

〈표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활용요건

요건	내용
과잉공급 업종	• KSCI 3단위 또는 보다 상세 단위 기준으로 확정 • 판단기준 : 아래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최근 3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업종 ② 가동율·재고율 등 보조지표 5개 중 2개(제조업)~1개(서비스업) 이상 충족 ③ 수요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요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어려워 과잉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신산업 진출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인정하는 신성장기술(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활용기업 •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서비스 생산 산업
산업 위기지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군산, 거제 등 6개 지정)의 주된 산업

〈표 7〉 제20대 국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

일시	의안번호	대표발의	내용
2020-09-07	2103521	구자근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8월 12일까지로 연장
2020-12-17	2106645	강기윤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법으로 운영
2021-09-10	2112516	정태호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 -심의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저자정리

IV. 맺음말

□ 코로나19로 유예된 기업부실이 세계 경기둔화 및 금리인상으로 본격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미국과 한국의 금리인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증가한 금융비용 부담이 가계 및 기업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
- 코로나19 기간동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로 인해 지연된 기업 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증대

□ 분석기간인 2017-2021년 한계기업 증가세가 코로나19기간에도 지속되었으며 부실의 만연화 우려

- 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내 한계기업의 수가 많음
-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이, 상장기업 보다는 비상장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율이 높음
- 미국의 NYSE·NASDAQ,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 홍콩증권거래소(HKSE), 중국의 상하이증권거래소(SHSE)와 선전거래소(SZSE), 한국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의 5개 증권거래소 기업을 비교한 결과 2021년 한계비중과 2017-2021한계기업 비중의 증가폭이 HKSE에 이어 한국 KOSE·KOSDAQ이 두 번째로 큼

□ 기업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기존 법제를 정비할 필요

- 기업구조조정 제도 중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일몰 이전에 시작해야 함
- 2001년 이후 도입 이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한 지속적 수요가 존재하므로 상시화하고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
- 2016년부터 시행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타 제도와 차별화는 사전적 구조조정제도로 상시화하여 운영할 필요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22년 11월 2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타워 46층